

의안번호	2220324
의 퇴 인	곽규택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계번호	26C3836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3항 (비용의 보조)	○ 제2항*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함(신설) ※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,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2분의 1 이내로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제3항 (비용의 보조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비용의 보조(안 제24조제3항)

-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국가와 시·도가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비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/2에서 2/3 이내로 확대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국가와 시·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는 2/3,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운영비 등”)은 1/2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

-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국가와 시·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 등의 규모에 신규 보조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음
- 그러나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나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은 별도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, 각 시·도가 관할 시·군·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지원 비율을 2/3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현재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구매비 등 지원 현황은 아래 [표 1]과 같음

[표 1]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비 지원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26
설치비(신축)	10,157	19,781	10,947	3,151
장비구매비	8,037	8,462	9,402	7,798
차량구매비	1,262	1,382	2,238	2,763
합계	19,456	29,625	22,587	13,712

주: 2023~2025년은 결산, 2026년은 예산편성액 기준이며, 운영비는 미지원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